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1.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대상안건

의안번호	제출자	의안명
제434호	김재진 의원 외 7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435호	김재진 의원 외 6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나. 발의일자: 2021년 12월 8일

다. 회부일자: 2021년 12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2.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재진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여비의 지급구분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근무지 내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여비지급일, 여비지급절차,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규칙안 및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 일괄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계급별 여비의 지급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4조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시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예외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5조는 거짓 출장신청 등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여비 액수와 함께 그 2배의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 출장이거나 12킬로 미만인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규정하고,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근무지 내 출장여비의 기준을 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비 지급일, 지급 절차,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우리

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4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8일  
발 의 자: 김재진 의원 외 7명

##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여비의 지급구분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다.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 일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

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

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받은 여비 액수와 함께 그 2배의 금액을 더하여 징수(徵收)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조례에 따라 공무원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였거나 하는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여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여비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5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8일

발의자: 김재진의원 외 6명

##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근무지 내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여비지급일, 여비지급절차,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무원 여비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정산)** 지출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액여비지급대상(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기술지도 출장공무원	산림감시요원(임업직), 측량요원(토목 및 지적직), 토목공사기술지도요원(토목직), 건축공사감독요원(건축직), 농업지도요원(농촌지도직), 기타 기술지도요원
상시 출장공무원	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마약단속요원, 계량기검사요원, 운수지도요원, 보도(사진)요원, 청소지도요원, 기타 당해기관의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자

\* 임시직원은 제외한다.